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투 보 고

1994. 12. 8.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 제 출 일 자 : 1994년 12월 1일

○ 회 부 일 자 : 1994년 12월 1일

3. 제 안 이 유 :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제고토록하고,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 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토록 하려는 것임.

4. 주 요 골 자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충북공업고등학교(청주시 가경동 666번지)에 추가로 설치함 (안 별표)

5. 검토 의견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제고토록하고,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학습 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토록 하려는 것이며
충북공업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려고 교육부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 첨